

# 미공개중요정보 처리 지침

(2021.03.22. 제정)

1. 미공개 중요정보의 정의 :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(즉, 6 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 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, 주식의 포괄적 교환,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)의 업무 등과 관련되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, 실적의 예상이나 결산에 관한 정보, 공개매수에 관한 정보, 주식등의 대량취득 및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, 기타 기업의 운영 또는 재산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를 말한다.
2.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 : 내부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정보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및 지인을 통하거나 또는 우연히 취득한 경우에도 그것이 미공개중요정보라면 그것을 이용한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.
3. 미공개중요정보 취득시의 행동 강령 : 주식 운용 부문의 모든 임직원은 상장기업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별첨된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CIO(또는 Deputy CIO)와 준법감시인에게 즉시(증권시장 마감후에는 익일 시장 개시전까지) 보고한 후 컴플라이언스팀장에게 제출한다.
4. 보고 받은 CIO(또는 Deputy CIO)는 모든 주식운용역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하여 아래의 주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해당 종목의 매매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준법감시인은 OMS 를 통하여 해당종목의 매매주문이 이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.
  - 4-1.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: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로부터 1 일
  - 4-2.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: 공개된 때부터 3 시간
  - 4-3.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: 게재된 날의 다음날 0 시부터 6 시간,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로부터 6 시간
  - 4-4.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: 방송된 때로부터 6 시간
  - 4-5.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: 제공된 때로부터 6 시간

5. 미공개중요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: 상장기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인지 여부를 확실히 모를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보고 절차를 따르며 보고 받은 CIO(또는 Deputy CIO)는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라고 결정하면 상기 4 번의 절차에 따른다.

- 부 칙 -

1. 본 지침은 2021. 03. 22 일부터 시행 한다

##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신고서

1. 정보취득자의 성명 :
2. 취득일시 :
3. 취득 경로 :
4. 관련 기업 :
5. 신고서 제출 일시 :
6. 정보의 내용 (6 하 원칙을 적용하여 아래에 기재)

CIO (또는 Deputy CIO) :

(인)

준법감시인 :

(인)

컴플라이언스팀장 회람 :

(인)